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 (규모) 36,000건 내외 / 67,900백만원
- ☐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신청·접수	요건확인	분야별 폐업지원			
온라인으로 (hope.sbiz.or.kr) 일괄 신청접수	신청요건 일괄확인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소상공인	공단	컨설턴트	전문업체	법무법인	법무법인

2

세부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 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시 제출 생략

2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2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 ①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③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상동		상동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④ 폐업사실증명원	* 종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 명세 (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 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 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⑤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4월 초)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 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 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①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4. 1월 1일 ~ 예산 소진시	연중 수시접수
점포철거비 지원	'24.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참고 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